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-24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5. 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2개의 법정동·행정동(서교동, 합정동)이 나누어져 있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이 발생되기에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,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합정동 416의1번지 외 154필지를 서교동에 편입함.

3. 개정근거

『지방자치법』 제4조의2 제1항 및 『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』 제9조의2

4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2. 4. 5. ~ 2012. 4. 25. (제출된 의견 있음)
- 나.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가정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2. 5. 1.)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바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